

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(제12조의4 관련)

1. 빈용기의 회수,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

가.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

- 1) 지역별로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2) 빈용기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2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.
- 3) 회수된 빈용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.
- 4) 표준용기는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, 표준용기가 아닌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생산, 회수,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품 출시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회수·재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5)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반환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- 6) 환경부장관이 4)에 따라 수립한 생산, 회수, 재사용에 관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.
- 7)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자원순환보증금 환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-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홍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.
- 8)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용기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9)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고, 회수, 파손 및 신병 투입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나. 빈용기 취급 도매업자

- 1) 도매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소매점에서 보관 중인 빈용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매점과 협의하여 회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2)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전액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소매점 등과 협의하여 취급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- 3)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

해야 한다.

- 4)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·수입 회사별(표준용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), 용량별, 회수경로별(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, 제품별(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)로 각각 분류하여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.
- 5) 회수용기 보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,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.
- 6)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# 다.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

- 1)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가)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(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.
  - 나) 빈용기가 훼손·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
- 2)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.
- 3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- 4)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, 해당 빈용기를 제조·수입 회사별, 용량별, 제품별로 분류하여 도매업자 및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. 이 경우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협의하여 분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- 5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- 6) 반환되는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.
- 7)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

에 제공해야 한다.

## 2.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

### 가.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

- 1)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- 2)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을 제3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해야 한다.
- 3)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  - 가)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
  - 나)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
  - 다)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(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수납 및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.
  - 라)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[뚜껑, 빨대, 컵홀더(cup holder) 등]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
  - 마)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
  - 바) 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영업표지(브랜드)의 1회용 컵만을 반환받는 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
- 4)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5)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이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3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수집·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6) 자원순환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판매·반환 수량, 수집·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한 수량 등의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### 나. 1회용 컵 수집·운반사업자

- 1) 반환된 1회용 컵을 회수하는 수집·운반사업자는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회수한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제3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,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- 2)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,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수집·운반사업자는 1회용 컵의 수거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해당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
다.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

- 1)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수집·운반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1회용 컵을 표준용기와 표준용기가 아닌 1회용 컵으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선별해야 하며, 재활용 방법이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.
- 2) 1회용 컵을 재활용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,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.

3.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준수사항

가.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·처리지원금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나. 부당한 방법으로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.

다. 1회용 컵을 적절하게 수집·운반할 수 있는 수집·운반사업자와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.